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Following the Enforcem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박남권¹ · 채종길^{2*}Nam-Kwun Park¹, Jong-Gil Chae^{2*}¹Expert Committeeman, Urban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eoul, Republic of Korea²Research Fellow, Division of Safety and Infrastructure Research, Seoul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ong-Gil Chae, chaie76@si.re.kr

ABSTRACT

Purpose and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general managers of critical disaster work at a total of 4,555 facilities managed by 11 city-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this, work-related matters are analyzed and structural causes of accidents and disasters are derived. And we would like to take improvement directions and countermeasures. **Result:** There is a limit to the recognition and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nd improvement is needed in work overload and avoidance, commun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Conclusion:** As the burden of work is high, it is necessary to prohibit other tasks and concurrent positions, hire safety management experts, grant authority in line with the work, require an incentive system for safety work, and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suitable for the ability to perform safety work.

Keyword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Management, Serious Accidents

요약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11개 시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총 4,555개 시설의 중대재해 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 이해도, 업무 부하, 처리 방식 및 애로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고 및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 인식 및 예방업무의 한계가 있고 업무 과중과 회피, 의사소통, 정보 관리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업무 부담이 큰 만큼 타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 업무에 부합하는 권한의 부여, 안전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안전업무 수행 능력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중대재해

Received | 3 June, 2024

Revised | 16 July, 2024

Accepted | 18 July, 2024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안전 증진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Kwon, 2022).

이에 정부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명확한 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사고 예방 및 안전 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법적 조치이다(Choung, 2024).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처법은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중대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실 내에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여 중처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부서의 주된 역할은 서울시 산하 각 기관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한 문서의 수집, 정리 및 보고에 집중되어 중처법에 따른 예방 업무와 임무 수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이 특정 부서의 단독 책임이 아닌 조직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중처법의 목적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나 부서의 신설을 넘어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11개 시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총 4,555개 시설의 중대재해 업무 총괄 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법의 이해도, 업무 부하, 처리 방식 및 애로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고 및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행 연구

중처법 시행 전에 발표된 여러 연구 논문들은 법률의 적용 범위와 명확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예로 Kim(2021)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적용 대상자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중처법의 본래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 예외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Jeong(2023)은 중처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모에 따른 법 적용의 형평성, 법규의 포괄성 및 명확성 부족, 과도한 처벌 수위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Min(2022)은 중처법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부 공정과 스마트 기술의 연계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대재해 요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요소의 연관성이 높아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실현 가능함을 밝혔다. 반면, Huh et al.(2023)은 2021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현황과 유사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중처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구성의 취약점과 법-제도, 예산편성-집행 및 근로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보호 및 적용 대상 범위의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경영책임자의 선정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처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일부 연구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 규정이 구체적이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또한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고자 스마트기술의 적용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지 적용 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처법 시행 이후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현실적이 못하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처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10일간) 서울시 산하 11개 기관에서 중대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담당자들(2~7명)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1~2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 기관은 시설 관리의 전문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은 수십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며, B그룹은 한 개에서 수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며, 세부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roup-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구분	A그룹	B그룹
면담기관	OO시설공단, OO교통공사, OO사업본부, OO시설사업소, OO수도사업소	OO미술관, OO여가센터, OO정비센터, OO재난본부, OO광장, OO박물관
관리시설 수	1개 기관이 다수의 시설물 관리	1개 기관이 소수의 시설물 관리
보유인력 특성	시설관리 전문가 다수, 전문성 보유	시설관리 최소인력 보유, 전문성 낮음
면담대상자	중대재해 관련 업무 총괄 2~7명	중대재해 관련 업무 총괄(+ 직렬업무) 1명

Table 2. Key content of the interview survey (For the person in responsibility of serious accident)

주제	주요 내용
1. 조직 및 인력의 중대재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 파악	- 조직 전체 및 구성원의 인식 여부: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 - 대상 시설 현황 인지 여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다. - 업무범위 설정 수준: 중대재해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2.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청취	- 업무분야: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 업무량: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 여부를 파악한다. - 업무절차: 업무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 교육: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3. 업무별 문제점 파악	- 업무 과다: 업무량이 과도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업무 배분 문제: 업무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특정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 전문성 부족: 중대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문제를 파악한다.
4. 실질적 안전관리 현황 조사	- 인수인계 과정의 공백, 안전점검의 주기와 내용, 안전점검 예산, 사고 및 재해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수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하고,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도 함께 파악한다. -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진단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중대재해 업무 이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중처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들의 그 간의 경험과 의견을 중심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참조).

인터뷰 조사 주요 현황

Table 2에 따른 4개의 대주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문서 전달과 보고체계의 비효율성 및 불명확성, 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과 권한 불균형, 안전업무의 과부하와 인력 부족 문제, 안전업무의 구조적 문제 등 총 10개의 세부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정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Table 3과 같다.

Table 3. Key status of interview survey

세부 주제	주요 내용
1. 문서 전달과 보고체계의 비효율성 및 불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내용의 문서가 다른 시점에서 중복해서 전달되는 경우 발생. 예를 들어, 해빙기 점검문서가 1주 일 간격으로 두 번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A, B 그룹 공통사항) · 기관의 총괄부서가 市와 기관 간의 업무 선상에서 일부 공문이 중간에 패싱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 (주로 A 그룹) · 안전계획서 작성 양식이 기관 내부 양식과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업무처리 시간 증가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주로 A 그룹) ※ 소수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보다는 다수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12개 부서와 관계된 OOOOOO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2. 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과 권한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적 규정에도 위배되는 안전문제를 제기하여도 타 부서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주로 B 그룹) - 예를 들어,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높이가 법 기준인 120cm보다 낮은 80cm로 설정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 실제로 OO부서는 이 문제를 10여년 동안 인지하지도 못함 ※ 호텔 난간 2세 여아 추락사고(대구 수성구 호텔), 난간 간격 25~30cm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상의 난간사이 간격 10cm 이하 미충족 · 안전관련 업무문서가 대부분 보안문서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접근 및 공유가 용이하지 않는 등 보고자료 작성 시에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음 (주로 A 그룹) - 열람문서 요청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고, 자료 제출 시에도 최소한의 내용만 제출하는 경향 · 안전업무가 부서의 주요업무가 아닌 이유로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업무 부담은 크지만 권한은 상대적으로 적고, 근무평가에서도 홀대받는 등 상대적 박탈감 지적 (일부 기관)
3. 안전업무의 과부하와 인력 부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기관 한정)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전담인력 1명에 불과 (주로 B 그룹) - 다소 규모가 큰 기관임에도 시민재해 1명, 산업재해 1명도 편성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 외 업무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업무가 추가로 부여된 상황
4. 개인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안전업무의 구조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업무는 타부서의 협조가 중요하나, 필요한 서류 수합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음(주로 A 그룹) - 타부서의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거나, 근무장소가 달라 업무자료의 질(quality)은 차치하고, 수합도 어려움 - 교육 대상 근로자(기간제, 촉탁직 등) 총원 및 이수 여부의 파악이 너무 어렵고, 근로자 교육이수 여부 체크를 위해 엑셀파일로 만들어 관리하나, 쉽지 않음 · 위탁업체의 이행 점검(반기1회) 제출서류의 질이 매우 낮고 취합도 곤란 (주로 A 그룹) - 대부분 영세업체로 담당자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서식도 갖추지 않은 채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고, 안전관리담당자들만 속이 타는게 현실임

Table 3. Key Status of Interview Survey (Continue)

세부 주제	주요 내용
5. 업무 지침과 지원의 부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수중보, 제방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조차 없는 상황으로 총괄과의 지원이 필요함 (A, B 그룹 공통)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여부, 안전 관련 물품 구매 및 시공 등 궁급한 사항이 있어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음 (주로 B 그룹) · 중대재해 업무 안내서가 있지만, 각 분야의 일선 담당들까지 전해지는데 간극이 있고, 안전관리자가 이런 부분까지 챙기는 것은 어려움 (A, B 그룹 공통) · 현재 구축 중인 ‘중대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보임 (A, B 그룹 공통)
6. 안전예산 편성 및 업체선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차원에서 외주업체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예산산출 시 표준대가에 근거하기보다 최소비용에 최대효과 관점에서 업체들로부터 받은 내역을 근거로 영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도 다수임 (주로 A 그룹) - 0000기관은 정부공공기관 중 하나인 0000기관에 비해 동일 업무 수행 시 점검비용을 2배 정도 지급한다라는 평이 있으며,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만큼 위탁업체가 안전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성남 정자교 규모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460만원), 정밀안전점검(1,600만원), 정밀안전진단(5,500만원). 실제 정기안전점검비용은 460만원의 7% 수준이었음
7. 시설의 안전점검 주체, 방법, 시기 등 안전점검 수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만큼 유해·위험요인이 없도록 상시안전점검(일일, 매일)을 수행하고 있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소방/전기/기계/가스/통신 등의 분야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A, B 그룹 공통) - 일상 안전점검은 대체로 체크리스트 없이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매일 안전점검은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일부는 서울시에서 배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나,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됨 · 0000기관은 위탁업체의 안전점검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하지 않고,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결과 검증 차원에서 ‘자체안전점검 TF’를 구성하여 특정 시설에 대해 이중삼중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00시설공단) · 0000기관은 ‘PDA(휴대용 안전점검 전용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이력관리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이룬 곳도 있음 (00교통공사)
8. 안전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안전점검결과를 해당시설 또는 관련부서 내에서만 가지고 있을뿐,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음. 다만, 중처법 이후 총괄부서에서 취합만 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A, B 그룹 공통) - 서울교통00, 서울시설00, 한강사업본부 등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엑셀을 이용하여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보공유 및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소수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도 매일 TBM 시에 청소원, 시설정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DB화나 이력관리는 하고 있지 않음
9. 사고·재해정보의 관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과 동일하게 특정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나, 정보의 수준이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처리를 위한 정도로, DB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음 (A, B 그룹 공통) ※ 사고·재해 정보를 해당시설의 관련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나, 사고발생장소, 원인 등의 상세 정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민감자료로서 비공개로 취급됨
10. 기타(대피훈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지만, 다수의 근로자에게는 교육 콘텐츠가 해당업무와 동떨어져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교육 우려 있음 (A, B 그룹 공통) · 반면, 기관 차원에서 위험성평가나 중처법 의무사항 등에 대해 별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담아 교육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음 (주로 A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중처법 인식의 한계

중처법 관련 업무는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해 사망사고만 예방하면 된다”는 협소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중처법 업무 총괄부서 및 담당자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 및 작업장에서 예상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예방적 업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예방업무의 한계

중처법 대응 부서는 실질적인 예방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중대재해 총괄부서(또는 팀, 담당)는 중처법 관련된 서류 업무에만 초점을 맞추며, 타부서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가 중처법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관련 증빙서류 구비로 오해되고 있다. 의무이행 증빙자료 수합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재의 업무시스템상 이행도 벽찬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관의 사고·재해 정보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등 각종 정보 수합·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발굴이 부족하다.

시중대재해예방과도 여러 업무로 업무 하중이 높아, 부서·산하기관의 이행점검/평가결과의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관점에서 부서의 핵심 임무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관장 등 상위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단순히 간호사를 채용하고, 부서나 팀을 설치하며 기존 직원에게 중처법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및 재해 위험이 감소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무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근로자, 시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위 경영진은 법률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 차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업무 과중과 회피

안전 업무의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하기관의 중대재해 총괄부서는 총괄부서대로, 그 아래 실무부서(사업소, 관리소 등)는 실무부서대로 중처법 이후 타 업무 대비 안전업무가 과다하여 안전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총괄부서의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1~2명에 불과하며,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공문서에 대응하고 일부는 현장점검, 안전점검 용역발주 등을 겸하고 있다.

실무부서의 담당자는 기존의 본인 업무(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에 더하여 중대재해 관련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총괄부서의 협조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OO공사는 시설의 특성상 새벽시간 때 점검이 많아, 총괄부서 및 산하기관 안전업무 담당자의 해당부서 평균 근무기간이 타 업무에 비해 길지 않다.

안전관련 자격이 있음에도 안전관리자로 발령받을 것을 염려해 사내 정보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숨기거나 반납하려는 경우도 있다.

의사소통 장애

안전 문제에 대한 소통과 의사 전달이 어려운 조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에게 지도를, 관리책임자(상급자)에게 조언을 할 당연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용역업체와 담당자 간의 관계 악화, 근무평가 불이익 등이 염려되어 사소한 문제도 말하기 어려우며, 개선 요구를 해도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 점검 업무는 급수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총괄부서도 실·본부·국 및 산하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고 보고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시민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 관리 및 활용 미흡

정보의 체계적 기록, 보관, 공유, 활용이 미흡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사고 정보는 관련 시설이나 전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자, 사고원인 등의 정보가 상세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기관/부서 내에서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모두가 공유하고 학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처법 시행으로 총괄부서에서 일부 가공된 자료는 수합하고 있으나, 이 정보의 활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2~3개월 전 발령받은 응답자 모두가 전임자로부터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인수인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소수의견으로 특별한 인수인계 없이 시설의 안전점검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점이 안전관리 공백을 만들어 내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보여진다.

형식적 안전점검의 잠재적 요인

답이 정해져 있는 안전점검, 과도한 예산 절감 또는 적정 예산 신청 포기 등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양호, A, B 등급'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안전점검이나, 예산에 맞추어 즉시 조치 가능한 지적사항만 담은 안전점검에는 잠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올해 시설비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만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안전 문제가 감춰질 우려가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시설을 점검하려는 의도, 실링 초과 염려로 적정 예산 신청을 애초에 포기하거나, 수의계약 범위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22년 1월에 시행된 중처법은 여전히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실무 차원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중처법의 개선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진단을 담당자 심층면담을 통해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기관장 또는 시장에까지 이를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고 중처법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업무중도 크다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중대재해 총괄담당자는 타 직렬업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 (2)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필요가 있다. 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해당 시설에 총괄 담당이 부재한 기관일수록 전담안전관리자 채용 요구 높다.
- (3) 업무 부담은 크지만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권한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문서열람권조차 없게 되어 있어 인해 현황 파악 지연은 물론 자료취합 시에 담당자들의 감정 소모가 커지는 만큼 업무 수행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4) 중대재해 총괄업무 전담자에게는 작업중지권한과 더불어 안전 감사 담당관 조사 요청, 사고 발생 시 조사참여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5) 안전점검 위탁 시 적절한 예산편성·지급은 충실한 안전점검의 기본이며, 중처법에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점검 예산 신청 시 표준대가 산출내역 첨부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 (6) 보직발령 후 대체로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부서 이동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승진 가점’, ‘인센티브’, ‘시장표창 TO 배정’ 등 수단 강구 필요하다.
- (7)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나뉘 차수별로 중대재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안전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 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시설 관리자들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타 업무 안내서, 교육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Choung, W. (2024).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Ewha Legal Science Institut, Vol. 28, No. 4, pp. 217-238.
- [2] Huh, J., Shin, M.-J. (2023).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ociety, Vol. 13, No. 2, pp. 98-126.
- [3] Jeong, S.-G. (2023). “Criminal law theoretical study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Korean Law Association, Law Review, Vol. 23, No. 1, pp. 73-88.
- [4] Kim, J.-Y. (2021). “The enactment and future tasks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Vol. 9, No. 4, pp. 43-66.
- [5] Kim, M.-J. (2020).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evere Accident Corporate Punishment Act.”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No. 42, pp. 105-122.
- [6] Kwon, O.-Y. (202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8, No. 3, pp. 470-477.
- [7] Min, K.-S. (2022). “A study on smart technology utilization plans in construction sites in preparation fo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9, No. 17, pp. 267-283.